

#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가족보호정책과 사회보장개혁의 공론장 형성\*

민 유 기\*\*

## 목차

머리말

I. 양차대전 사이 가족보호와 출산증가 정책

II. 고용주와 가족운동단체의 가족보호 공론장 형성

III. 좌파 정당과 노동운동의 가족보호 공론장 확대

맺음말

## 머리말

1969년 4월 상원개혁과 지방분권 방안 국민투표 불신임으로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이 사임하고 6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드골 파인 폼피두(Georges Pompidou)가 선출되었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 11월 프랑스의 전문 여론조사 기관 SOFRES(Société française d'enquêtes par sondages)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중요한 정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32-A00025)

\*\* 광운대 교양학부 조교수

적 사회적 제도나 권리가 침해되거나 축소된다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회보장의 축소를 응답자의 82%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답해 1위를 차지했고, 언론자유 침해에 71%가,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68%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답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기능과 권리의 축소나 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은 의회 61%, 노동조합 55%, 파업권 54%, 지자체 선거 53%, 정당 활동 42%, 기간산업 국유화 22%였다.<sup>1)</sup> 이 같은 결과는 프랑스인들이 2차 대전 이후 체계화된 사회보장 제도를 다른 어떠한 권리나 제도 보다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서독 등 주요 선진산업국들은 사회보장 제도에 기초한 수정자본주의를 발전시켜나갔다. 프랑스에서는 1946년에 기존의 가족수당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통합적 사회보장 체제가 탄생했다. 프랑스는 2001년에 ‘사회적 보호(protection sociale)’라 부르는 각종 사회보장 활동에 국내총생산의 28.5%를 지출했는데, 총 지출의 44%는 국민연금, 34.8%는 건강과 의료, 10.1%는 가족과 모성보호, 6%는 실업, 3.1%는 주택, 1.4%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 예방, 0.6%는 직업재교육 등에 사용하였다.<sup>2)</sup>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인구가 정체 수준이었기에 19세기 말부터 중시된 “인구와 가족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전후의 가족수당제도 개선과 사회보장제도를 낳게 하였다.<sup>3)</sup> 프랑스에서 사회보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과 모성보호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각종 사회입법을 통해 시작

1) *Le Figaro*, 10 novembre 1969.

2) *L'état de la France 2003*, Paris: La découverte, 2003, p.300.

3)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son histoire à travers les textes, t.III, 1945-1981*, Paris: Association pour l'étude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1997, p.61.

되었고 양차대전 사이에 크게 확대되었다. 1946년 통합적 사회보장 체제의 등장은 양차대전 사이의 가족수당,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sup>4)</sup> 20세기 전반기 가족보호와 인구증가 정책은 다양한 가족운동 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가능했고, 1차 세계대전 직후 일부 고용주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가족수당은 1932년 법으로 의무가 되었다. 1939년에 제정된 가족법은 비시(Vichy) 정부의 확대 실행을 거쳐 전후 사회보장 체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전반기 가족보호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먼저 1943년에 나온 가족수당 발전과정에 대한 법제사 연구가 있다.<sup>5)</sup> 1973년에 정부 지원으로 구성된 ‘사회보장 역사 위원회’ 산하 ‘사회보장 역사연구 협회’에서 1997년에 출간한 가족수당금고의 역사서 역시 제도 발달사 연구이다.<sup>6)</sup> 사회사적 연구로는 관련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있는 1962년에 출간된 탈미(Robert Talmy)의 박사논문이 있다. 그는 가족보호 정책을 추동한 사회적 힘을 가족운동 단체의 활동에서 찾는다.<sup>7)</sup> 19세기 말 인구통계학자 베르티옹(Jacques Bertillon)과 사회개혁적 전문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결성한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전국동맹’(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이하 인구동맹)의<sup>8)</sup> 활동을 강조하는 1985

---

4) Brono Valat, *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1945-1967: l'Etat, l'institution et la santé*, Paris: Economica, 2001, pp.14-18.

5) Pierre Drouhet, *L'évolution juridique des allocations familiales*, Paris: Edition sociales française, 1943.

6) Jacqueline Ancelin, *L'Action sociale familiale et l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Paris: Association pour l'étude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1997.

7) Robert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en France 1896-1939*, t.I, t.II, Aubenas: Union nationale d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1962.

년에 나온 한 논문도 있다.<sup>9)</sup> 보다 포괄적으로 다자녀가족(famille nombreuse)에 대한 연구, 페미니즘 운동이 가족보호 정책에 미친 영향력과 비시 정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도 있다.<sup>10)</sup> 국내 학계의 성과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가족보호 정책을 ‘출산 파업’과 ‘민족의 자살’이라 불린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파악한 논문, 양차대전 사이 페미니즘과 출산 담론을 분석한 논문, 비시 정부의 가족정책을 다룬 논문이 있다.<sup>11)</sup>

이들 선행연구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양차대전 사이 가족운동 단체의 활동은 물론 진보진영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을 다룬 연구가 없으며, 프랑스 학계에서 나온 인구동맹과 가족운동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진보진영이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없다. 양차대전 사이 가족운동 단체들은 도덕적 보수적 성향이 강했으며 이런 호

- 
- 8) 인구동맹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몇 년간 ‘인구감소에 대항하는 전국동맹 (Alliance nationale contre la dépopulatio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다시 ‘프랑스 인구증가를 위한 전국동맹’으로 되돌아갔다가 1937년부터 다시 ‘인구감소에 대항하는 전국동맹’으로 명칭 변경해 194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 9) Françoise Thébaud, “Le mouvement nataliste dans la France de l’entre-deux-guerres: l’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Revue d’histoire modern et contemporaine* t.32, avril-juin 1985, pp.276-301.
- 10) Virginie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une question démographique, un enjeu politique France 1880-1940*,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8. Anne Cova, *Maternité et droits des femmes en France XIXe-XXe siècles*, Paris: Economica, 1997. Michèle Bordeaux, *La victoire de la famille dans la France défaite, Vichy 1940-1944*, Paris: Flammarion, 2002.
- 11) 민유기, 『‘출산파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프랑스 가족보호정책의 기원 1874-1914』, 『서양사론』 89호, 2006, 143-176쪽. 신행선, 『프랑스 비시 정부 시기 가족정책과 여성』, 『서양사론』 92호, 2007, 153-176쪽. 신행선, 『양차대전 사이의 프랑스 페미니즘과 출산에 대한 담론 1919-1939』, 『한국프랑스학 논집』 61집, 2008, 427-448쪽.

름은 비시 정부의 가족정책에 상당한 연속성을 부여했다. 얼핏 보면 양차대전 사이 ‘고용주 온정주의’(paternalisme), 가톨릭 사회운동, 보수적 중도우파 정치세력에 비해 혁명적 노동운동 진영과 사회당 및 공산당이 가족보호 정책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 같기에 기존 연구들은 이 문제를 간과했다. 하지만 1946년 통합적 사회보장의 탄생에는 비시 정부에 저항했던 우파 드골주의자들 뿐 아니라 2차 대전 직후 정계 주도권을 장악한 좌파 정당들의 기여가 크다. 따라서 양차대전 사이 진보진영이 가족보호에 어떤 입장을 지녔는지를 파악해야만 전후 사회보장제도의 등장 배경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 글의 목적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가족보호 정책의 발달 과정, 이에 영향을 미친 고용주 온정주의와 보수적 가족운동 단체들의 활동이 진보진영의 요구들과 상호연관을 맺으며 형성하고 발전시킨 가족보호 정책과 사회보장 개혁의 공론장(public sphere)을 분석하고, 이 공론장이 전후 사회보장 체제에 영향을 주었음을 고찰하는 것이다.

## 1. 양차대전 사이 가족보호와 출산증가 정책

프랑스의 인구감소(dépopulation)는 19세기 초부터 진행되었다. 합계출산율은 1801-1810년 3.30, 1841-1850년 2.74, 1891-1900년 2.22, 1901년에 2.20, 1906년에 1.95로 계속 줄어들었다.<sup>12)</sup> 이민자 유입이 없다면 부모가 두 자녀를 낳는 것, 즉 합계출산율 2.00이 인구를 유지하는 자연적 기준인데 프랑스는 이미 20세기 세기 초에 2.00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1911년 1.90이던 합계출산율

12) Jacques Bertillon, *La dépopulation de la France: ses conséquences, ses causes, mesures à prendre pour la combattre*, Paris: F. Alcan, 1911, pp.1-2.

은 4년간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장에서 돌아온 젊은 병사들의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인해 1920년에 2.14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으나 1928년 1.83, 1938년 1.46으로 다시 크게 감소했다.<sup>13)</sup> 저출산은 총인구의 정체를 가져왔다. 1900년에서 1939년 사이 프랑스 인구는 3% 증가했으나 같은 시기 독일 인구는 36%, 이탈리아 인구는 33%, 영국 인구는 23% 증가했다.<sup>14)</sup> 프랑스 인구가 그나마 3% 증가한 것은 “인구의 몰락을 막아준 이민자” 때문이었다. 1차 대전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1920년대 이민이 크게 늘어나면서 1931년 인구조사에서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89만 여명이 외국인으로 파악되었다.<sup>15)</sup>

출산 감소가 심각하자 여성을 가정에 충실하게 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도 위축되었다. 농업 부분을 제외하고 1913년 남성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58명이었는데 1차 대전 기간 전쟁터에 나간 남성을 여성의 노동이 대체하면서 1921년에는 이 비율이 남성 100명당 여성 61명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점점 감소해 1930년에는 54명으로 세기 초 보다 줄어들었다.<sup>16)</sup> 여성들은 1차 대전 종전 이후 돌아온 남성에게 다시 일 자리를 내주었고, 1920년대 모성의 역할을 강조하던 보수적 분위기

---

13) Jacques Dupâquier, als., *Histoire de la population française t.IV*, de 1914 à nos jours, Paris: PUF, 1988, p.75, p.85. F. Théaud, “Le mouvement nataliste”, p.276. R.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t.II*, pp.218-219.

14) Eugène Weber, *La France des années 30. Tourments et perplexités*, Paris: Fayard, 1994, p.23.

15) 1920년대 프랑스로 유입된 이민자는 유럽인들로 그들의 국적은 이탈리아 약 80만명, 폴란드 약 50만명, 에스파냐 약 35만 명, 벨기에 약 25만 명, 그 외 스위스, 러시아, 독일, 포르투갈 등이었다. Dominique Borne, Henri Dubief, *La Crise des années 30, 1929-1938*, Paris: Seuil, 1989, pp.197-198. p.210.

16) *Ibid.*, p.203.

탓에 손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20세기 초와 30년대 초의 다자녀가족(famille nombreuse) 비교 역시 저출산 현상을 잘 보여준다. 1937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인구회의에 제출된 통계에 따르면 1906년을 100이란 기준으로 설정할 때 1931년에 자녀가 없는 가족은 106, 한 자녀 가족은 125, 두 자녀 가족은 103, 세 자녀 가족은 98, 네 자녀 가족은 84, 다섯 자녀 가족은 78, 여섯 자녀 가족은 71, 일곱 자녀 가족은 68, 여덟 자녀 가족은 66, 아홉 자녀 가족은 66, 열 자녀 이상 가족은 64이다.<sup>17)</sup> 즉, 1906년과 1931년 사이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이 줄어들었고 대신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명 혹은 두 명만 낳은 핵가족이 늘어났다.

20세기 전환기의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은 1차 대전 이후 다시금 크게 확산되었다. 전쟁 막바지인 1917년 11월에 수상에 취임한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는 1919년 9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후 10월 상원에서 “베르사유 조약은 프랑스에 많은 아이들을 요구한다. 독일군의 대포를 획득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더 이상 프랑스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몰락할 것”이라고 연설했다.<sup>18)</sup>

1919년 11월 총선에서는 ‘국민블럭’(Bloc national)이 승리하였다. 다양한 중도우파들이 연합한 국민블럭은 정부 프로그램 내에 “아동 보호와 다자녀가족 지원, 출산을 장려할 모든 조치, 부양가족에 따른 공공 부담금의 균등”을 포함시켰다.<sup>19)</sup> 1921년까지 유지된 국민블럭의 첫 정부는 다자녀가족에 우호적인 장관들이 많았다. 재무부장관이

---

17) *Congrès international de la population Paris 1937, t.V. Démographie statistique, études spéciales, nuptialité, natalité, mortalité*, Paris: Hermann, 1938, p.109.

18) Sénat, *Journal des débats*, 1919, pp.1625-1626.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123에서 재인용.

19) *Plus Grande Famille, janvier 1920*, p.3.

여섯 자녀를 두었고, 위생과 사회보장부장관 브르통(Jules-Louis Breton)이 다섯 자녀, 해군성장관 랑드리(Adolphe Landry)가 세 자녀, 상업부장관 이삭(Auguste Isaac)이 열 자녀를 두었는데, 이들은 인구동맹이나 가족보호 단체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삭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전국다자녀가족동맹’ 대표를 맡기도 했다.<sup>20)</sup>

1919년 11월 총선으로 구성된 중도우파 정부는 1920년부터 다양한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을 실시하였다. 위생과 사회보장부장관은 1920년 1월에 인구동맹이 참여하는 정부 내 ‘출산최고자문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natalité, 이하 CSN)를 구성하였다. CSN은 산모와 신생아 보호, 유아보호, 위생과 육아 개선, 영아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한 모든 정부 논의를 주도했고 산하에 출산증진위원회, 모성과 아동보호 위원회, 다자녀가족 위원회를 두었다.<sup>21)</sup> 이후 1924년 봄까지 CSN의 논의를 거친 많은 다자녀가족 지원 법령이 제정되었다.

1924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좌파연합(Cartel des gauches)의 정부 프로그램에는 저출산 극복이나 다자녀가족 지원 내용이 없었다.<sup>22)</sup> CSN 주도로 1926년에 ‘어머니의 날’(fête des mères)이 공식화되었을 뿐 다자녀가족을 지원하는 주요 법령은 거의 제정되지 않다가 1928년 4월 총선에서 다시 중도우파가 승리한 이후 관련 주요 입법이 다시 등장했다. 1920년대 제정된 다자녀가족 지원 주요 법령은 첫째, 출산장려금 지급, 둘째, 세제혜택, 셋째, 공공요금 감면, 군 복무 혜택과 학비 감면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sup>23)</sup>

---

20)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123.

21) *Ibid.*, p.127. J. Ancelin, *L'action sociale familiale*, p.36.

22)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135.

23) 1920년 2월 16세 미만 세 자녀 가족, 두 자녀를 둔 과부나 홀아비 가족 빵 가격

1920년대 초반 보수 우파는 다자녀가족 지원과 함께 출산감소에 영향을 주는 네오맬더스주의자들의 활동을 억제했다. 1896년에 아나 키스트 로뱅(Paul Robin)의 영향으로 설립된 ‘인간쇄신동맹’(Ligue de la Régénération humaine)을 비롯한 여러 네오맬더스주의 단체들은 출산과 아이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를 거부하기 위해 ‘출산파업’을 주장했다. 또한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율권을 주장하며 낙태를 옹호했고, 임신 부담이 없는 사랑과 행복 추구를 위한 피임을 널리 선전하였다.<sup>24)</sup> 하지만 1차 대전 이후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애국주의로 추켜세우는 분위기에서 사회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0년 7월 피임법 유포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성병 예방을 위한 남성 피임수단을 제외한 여성 피임 방법의 유포를 금지하고 낙태시술자와 해당 여성의 처벌을 규정한 이 법은 1923년 3월 수정 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1920년 이

---

할인. 1920년 4월 1년 뒤부터 도별로 셋째 혹은 넷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위한 정부 예산 사용. 1920년 5월 다섯 자녀 이상 가족에게 프랑스 가족메달 메달 수여와 각종 혜택 제공. 1920년 6월 30세 이상 독신 소득세 납부액의 25% 추가 납부, 결혼 후 2년 내 자녀 없는 가장 소득세 납부액의 10% 추가 납부. 1920년 9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박물관 입장료와 철도요금 감면. 1921년 1월 세 자녀 이상 소득이 없는 다자녀 가족 최우선 공공구호. 1921년 3월 아이 있는 병사, 전쟁에서 두 형제를 잃은 병사, 아버지 사망으로 가장이 된 병사의 식민지 파병 제외. 1923년 7월 다자녀가족지원법: 13세 이하 혹은 학업 연장이나 직업훈련기간일 경우 16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세 번째 아이부터 양육수당 지급, 세 자녀 이상 가족 세금 감면. 1923년 7월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비율 감소, 상속세와 양도세 감면. 1924년 4월 부양자녀 있는 공무원 정년 최대 3년 연장 가능. 1926년 6월 자녀수에 따른 학비 감면, 장학금 지급. 1926년 7월 파리 세 자녀 이상 가족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요금 할인. 1928년 3월 군 승진 시 가족 수 고려, 가계 책임 병사 군 복무 중 가족부양수당 지급. 1928년 4월 출산 의료비 환불, 출산휴가비 지급. 1929년 9월 결혼 병사 식민지 파병 금지. 1930년 9월 세 자녀 이상 가장 병사 군 복무 단축, 여섯 자녀 가장 병역 면제.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127. p.134, pp.284-288. R.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II*, p.30,

24) 민유기, 「‘출산파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155-156쪽.

후 주요 활동가들이 감옥에 가면서 거의 사라진 네오맬더스주의 활동은 1930년에나 일부 재개되었다.<sup>25)</sup>

20년대 초반 중도우파 정부의 가족보호 정책은 다자녀가족에 여러 혜택을 제공했지만 노동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수당은 1차 대전 직후 고용주들에 의해 시작되어 확대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에서 가족수당을 사회적 서비스로 파악하며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1932년 3월11일 가족수당 의무화 법이 제정되었다. 가족수당 의무화 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이와 성별 구분 없이 산업, 상업, 농업, 자유직업 노동자와 피고용인을 둔 모든 고용인은 가족수당금고 혹은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노동부의 허가로 구성되는 고용주연합 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가족수당은 노동자와 피고용인이 부양하는 의무교육 연령을 넘지 않은 프랑스 거주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임금에 대한 가족수당 비율은 각 도별로 직종 전체 또는 직종 범주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포고령으로 결정된다. 산업채해로 노동이 중단된 경우에도 가족수당은 유지된다. 가족수당은 양도불가능하며 압류불가능하다. 노동부 산하에 가족수당 고등위원회를 설립한다.<sup>26)</sup>

의무적 가족수당은 16세 이하 2번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고용주들이 운영하던 가족수당금고를 유지하도록 해 고용주의 자유를 보장해주었다. 하지만 1932년 법은 기존의 가족수당금고제도를 ‘의무화, 일반화, 제도화’하였다. 고용주가 선택 가능했던 가족수당이 의무화되고 정부에 의해 그 수혜 금액과 가족수당금고 운

---

25) Christine Bard, *Les femmes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au 20e siècle*, Paris: A. Colin, 2001, pp.53-54. Francis Ronsin, *La grève des ventres: Propagande néo-malthusienne et baisse de la natalité en France 19e-20e siècles*, Paris: Aubier, 1980, p.60.

26) *Journal officiel*, 12 mars 1932.

영규칙이 마련되도록 한 것이 이 법의 성과였다.<sup>27)</sup> 가족수당은 1932년부터 노동인구의 ‘하나의 권리’가 되었다.<sup>28)</sup>

랑드리는 1933년에 출간한 저서 『인구 혁명』에서 이때까지의 가족보호 정책을 뛰어넘어 관련 입법을 계속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9)</sup> 1932년 5월 하원 선거에서는 좌파가 승리하였으며, 1936년 5월 하원 선거에서는 급진당, 사회당, 공산당 연대인 ‘인민전선’(Front populaire)이 승리하였다. 인민전선은 1937년 여름에 와해되었으나 2차 대전이 발발하여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고 비시 정부가 들어선 1940년 여름까지 의회와 정부는 사회당과 급진당이 주도하였다. 이 기간에는 1932년 가족수당 의무화 법의 내용을 보완하며 개선하는 여러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일부 고용주들이 가족수당 의무화로 인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1934년 12월9일 법은 가족수당 도입이 임금 삭감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sup>30)</sup> 또한 1938년 3월31일 법은 각 도의 가족수당 비율을 통일했고, 같은 해 6월14일 법은 농촌의 개인 경작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을 규정했으며, 같은 해 11월12일 법은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주부에게 수당 지급을, 같은 해 11월18일 법은 가족수당금고를 운영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sup>31)</sup>

---

27) J. Ancelin, *L'Action sociale familiale*, p.77. Dominique Ceccaldi, *Histoire des prestations familiales en France*, Paris: Association pour l'Etude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2005[1957], p.65.

28) Michel Chauvière, Pauline Kertudo, *Les mouvements familiaux et leur institution en France. Anthologie historique et sociale* (n.3 Cahier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Paris: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2006, p.12.

29) Adolphe Landry, *La révolution démographique: études et essais sur les problèmes de la population*, Paris: Sirey, 1933, p.94.

30) D. Ceccaldi, *Histoire des prestations familiales*, p.58.

1932년 가족수당 의무화 법과 함께 양차대전 사이 가족보호 정책을 특징짓는 것은 1939년 7월29일 제정된 가족법(Code de la famille)이다. 1938년 6월16일 베를린 주재 프랑스대사는 프랑스의 인구증가를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 제3제국의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에<sup>32)</sup> 대한 보고서를 급진당 소속 달라디에(Edouard Daladier) 수상에게 보냈다.<sup>33)</sup> 달라디에는 출산증가, 농촌인구 증가, 이민자 통합 대책 마련을 위해 1939년 2월에 정부 내 ‘최고인구위원회(Haute Comité de la population)’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가 가족법 제정을 준비하였다. 가족법은 대공황 시기 삶의 조건 악화로 고통을 받던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생각과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였던 국방을 위해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정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이 전자를 더 강조했다면 급진당은 후자를 더 중시했다. 달라디에는 1939년 6월4일 급진당 집행위원회에서 가족법 제정 준비를 소개하며 “아이가 없는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일 수 없다. 그러한 나라는 모든 침략에 길을 열려놓은 것이고 모든 탐욕에 노출된 먹이감”이라고 발언하였다.<sup>34)</sup>

1939년 가족법은 가족지원, 가족보호, 세제혜택, 그 밖의 다양한 혜택이라는 4개 장 총16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 후 2년 안에 태어나는 프랑스 국적을 갖는 첫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1조). 각 도별로 가족수당 비율 산정을 위해 정해진 기준 월급 액수의 두 배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한다(4조).

---

31) *Ibid.*, pp.74-78.

32) Cf., Lisa Pine, *Nazi Family Policy 1933-1945*, New York: Berg, 1999.

33)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151.

34) *Bulletin de l'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juillet 1939, p.213.



<그림 1> 1939년 발행 '출산' 우표

출산장려금 절반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지급하고 6개월 뒤에도 생존할 경우 나머지 절반을 지급한다(5조). 출산장려금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부재 시 아버지나 아이를 부양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6조).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가족수당금고에서 지급하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국가가 부담한다(8조). 가족수당은 두 번째 아이부터 지급한다(11조). 가족수당은 의무교육 연령을 넘지 않는 아이를 위해 제공되나 학업이나 직업연수를 받는 아이의 경우 17세까지 제공된다(12조). 가족수당의 최소비율은 둘째 아이의 경우 평균월급 10%, 셋째 아이의 경우 20%, 그 이상 아이마다 20%씩 증가한다(13조). 인구 2천명 이상 거주하는 곳에서 아이가 한 명 이상인 부모 중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만 수입이 있고, 수입이 없는 이가 아이를 부양할 경우 거주지 도 평균 월급의 10%를 '주부 수당'(allocation de la mère au foyer)으로 아이가 한 명일 경우 4세까지, 여럿일 경우 막내가 14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23조).<sup>35)</sup>

한편 1939년 달라디에 정부는 <그림 1>처럼 세 명의 자녀와 젊은 어머니가 요람에 누운 아이를 지켜보는 모습, 세 명의 자녀가 갓난아이를 수유중인 젊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을 담은 ‘출산’이란 우표 2종을 발행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선전활동에 힘썼다.

## II. 고용주와 가족운동단체의 가족보호 공론장 형성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은 1913년 7월13일 빈곤 다자녀가족 지원 법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 법은 최초의 가족수당 관련법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빈곤 다자녀가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긴급구호 차원이었고 그나마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대전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한편 19세기 말에 여러 산업도시들에서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 가족을 돕기 위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공동출자한 가족금고가 운영되고 있었다.<sup>36)</sup> 하지만 본격적인 가족수당은 1차 대전이 끝나가던 무렵에 시작되었다. 그르노블(Grenoble)의 조이아(Joya) 수력기계 회사의 기술감독 로마네(Emile Romanet)는 노동자들의 궁핍한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고용주와 도내 다른 공장주들을 설득해 다자녀가족 노동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1917년과 1918년에 산업도시들인 루베-투르코앙(Roubaix-Tourcoing), 로리앙(Lorient)에서도 고용주들에 의한 가족수당금고가 운영되기 시작했다.<sup>37)</sup>

35) *Journal officiel*, 30 juillet 1939.

36) 민유기, 『‘출산과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172쪽, 162쪽.

37) D. Ceccaldi, *Histoire des prestations familiales*, pp.19-22. 로마네는 가족수당의 창시자로 평가된다. Cf., Paul Dreyfus, *Emile Romanet, père des*

<표 1> 1920-30년대 가족수당금고 현황<sup>38)</sup>

년도	가입 기업체 수	노동자 수	수혜자 수
1920	230	50,000	11,500
1922	5,200	665,000	153,000
1925	10,000	1,150,000	266,000
1928	20,000	1,500,000	300,000
1930	32,000	1,880,000	480,000
1934	162,000	3,889,000	1,183,000
1935	218,000	4,238,000	1,305,000
1936	280,000	4,803,000	1,495,000
1937	390,000	5,315,000	1,617,000
1938	450,000	5,400,000	1,640,000

노동자와 고용주가 적립해가는 기금으로 운영되며 세 자녀 이상을 둔 노동자에게 임금에 추가로 가족수당을 제공한 가족수당금고는 흔히 ‘보상금고(caisses de compensation)’라고 지칭되기도 했다. 가족수당금고 가입 기업체는 <표 1>처럼 1920년에 230개에서 1930년 3만2천개로, 1938년에 45만개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에 가족수당 수혜 노동자는 1만1천5백 명에서, 48만 명으로 그리고 164만 명으로 늘어났다. 1920년에서 193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1930년대 크게 증가한 것은 1932년 가족수당 의무화법 때문이다.

1920년대 초에 가족수당금고에 참여한 고용주들은 가족수당이 ‘도덕적 의무’이며 노동자의 가족부양 비용은 ‘기업에 맡겨진 일반적인 부담금’이라고 생각했다.<sup>39)</sup> 가족수당금고 운영자들이 1921년에 결

*allocations familiales*, Grenoble: B. Arthaud, 1964.

38) D. Ceccaldi, *Histoire des prestations familiales*, p.24, p.56.

39) René Hubert, *Salaires, Allocations familiales et Caisses de compensation*, Paris: Edition Société d’Etudes et d’Informations économiques, 1921, p.16.

성한 가족수당금고연합 중앙위원회는 이 수당이 “출산을 돕고 사망을 더디게 하여” 인구증가라는 국민적 의무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sup>40)</sup> 하지만 고용주 온정주의가 지닌 속성이 그러하듯 가족수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수단이었다. 가족수당중앙위원회는 가족수당이 “전통과 가족의 의무를 존중하며, 노동자를 생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에 결합시켜 작업장 내의 충실한 핵심 협력자로 만들고, 노동자의 증오를 사라지게 하는 사회적 평화의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강조하였다.<sup>41)</sup> 일부 고용주들은 “물가 상승 시기에 가족수당 지급이 임금을 올리는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sup>42)</sup>

인구증가는 상업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1915년에 낭시(Nancy)의 상인조합(Chambre de commerce)은 인구동맹의 활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1916년에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국출산증진대회(Congrès de natalité)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sup>43)</sup> 1919년 낭시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출산증진대회는 인구증가를 위해 낙태에 대한 엄격한 억제와 일부 고용주들이 시작한 가족수당금고를 모든 사업체로 확대할 것, 자녀가 없는 부부에 대한 특별세를 신설하여 그 재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국출산금고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sup>44)</sup>

---

40) D. Ceccaldi, *Histoire des prestations familiales*, p.24,

41) Henri Hatzfeld, *Du paupérisme à la sécurité sociale 1850-1940*, Nancy: Presses universitaires de Nancy, 1989, p.177.

42) *Ibid.*, pp.175-176.

43)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112. R.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t.I, p.207.

44) *Compte rendu du 1er Congrès de la natalité*, Nancy: Imp. Réunion, 1919, p.29, p.54, p.56.

전국출산증진대회는 1938년 제20회 대회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제1회와 제2회 대회에 종교위원회가 존재할 정도로 종교적, 도덕적 색채가 강했으며 기본적으로 출산증가를 강조하는 인구증가주의자들의 대회였다. 출산증진을 위해 주택지원, 가족수당 확대, 가족부양비 경감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한 이 대회는 1919년에서 1924년까지는 주로 다자녀가족 지원 방안을, 1925년에서 1932년까지는 이민자의 국적 취득과 동화 등의 인구증가 방안을, 1933년에서 1938년까지는 가족보호정책의 구조적 개선과 가족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문제를 논의했다.<sup>45)</sup> 1920-30년대 전국출산증진대회는 인구증가주의 세력 증대와 선전활동 강화 및 인구증가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해가며 가족보호에 대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했다.

한편 1920년에는 릴에서 가족수당금고와 가족운동 단체들이 제1회 전국가족수당대회(Congrès des des allocations familiales)를 개최했다. 이 대회 역시 1938년까지 매년 개최되었다. 제1회 전국가족수당 대회에서는 릴 대학 법대 교수이자 가톨릭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연례 모임으로 1904년에 시작된 ‘사회주간’(Semaines sociales) 대표를 1919년부터 맡고 있던 뒤토아(Eugène Duthoit)가 작성한 가족권리 선언문을 채택했다. 총 9개 조항인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결혼에 기반을 둔 가족은 가부장의 권위 아래 위계적으로 구성되며 인간 생명을 전수, 유지, 발전, 영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에서 가족은 모든 실정법에 선행하고 그보다 우월하며 불가침한 권리를 갖는다.

1조: 가족은 스스로 증가할 권리를 지닌다. 가족을 통해서만 조국은 시민, 병사, 장인, 선교사, 탐험가들을 지닐 수 있다. 생명전수를 가로막는 비도덕적 선전, 노동의 해체, 이득과 공적부담의 잘못된 분배는 가족

45)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p.132-133, p.155.

이 지닌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2조: 가족은 교육의 권리를 지닌다. 가족은 아이의 몸, 지성, 영혼을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은 이 세 가지 목적에 부응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들을 사용할 권리, 특히 학교에 협력하면서도 통제하는 관계를 맺을 권리를 지닌다.

3조: 가족은 가족해체를 야기하는 거리와 공연 및 잡지에서의 방종, 알코올중독, 결핵, 열악한 주거, 이혼의 증가 같은 재앙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4조: 가족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지닌다. 외부 환경과 조응하며 구성되고 유지되는 생동감 있는 구체적인 조직인 가족은 적합한 주거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재산과 가족 부동산을 손쉽게 획득할 권리, 그리고 국도의 일부를 경작할 권리를 지닌다.

5조: 가족은 영속할 권리를 지닌다. 정치적 권위의 보유자들이 사라진다고 국가가 소멸되지 않듯이, 가정의 권위를 일시적으로 대표하는 이의 사망으로 가족은 소멸되지 않는다. 세대 전수가 보장되어야 하는 가족재산에는 과도한 세금이 부가될 수 없으며 자연히 강압적으로 분할될 수도 없다.

6조: 가족은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의 활력을 파괴하거나 가족의 삶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과 법의 보호 아래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임금이 적절한 기관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7조: 가족은 분배정의의 권리를 갖는다. 세금, 부담금, 요금, 보조금, 과도한 삶의 비용에 대한 수당, 연금 등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산정되어야 한다.

8조: 가족은 사회의 진정한 세포로서 시, 도, 지역 의회와 국회 선거에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아버지는 개인적 투표권 외에 아직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투표권 혹은 비례 투표권을 갖는다. 어머니의 투표권은 아버지의 사망, 부재, 아이에 대한 권리 행사가 금지될 때에 부여된다.

9조: 가족은 국가의 모든 위대함과 경제적 변영의 원천이기에, 가족의 행복이 사회입법들의 시작이자 운영지침이 되어야 한다. 모든 법령, 판례, 행정체제 등이 실제로 가족에 해가 되거나 악영향을 주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하는 모든 기관에서 가족의 고유한 영향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가족이 최우선이다! 만약 가족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번영한다면 가족 외의 모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sup>46)</sup>

이 가족권리 선언은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를 강조하고 공화주의자들이 1880년대부터 실시해온 세속적 학교교육에 대해 협력하면서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수적이고 가톨릭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가족의 삶을 위한 임금, 분배의 정의, 여러 사회적 재앙에 대한 가족의 보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치참여의 기회 확대 등을 요구하여 이후 가족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양차대전 사이 도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인구증가주의자들과 가족보호주의자들은 상호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고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인구증가주의자들이 전국출산증진대회를, 가족보호주의자들은 전국가족수당대회를 주도했다. 가족운동은 19세기 말에 조직되어 “가장 조직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인구동맹이 주도한 인구증가 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sup>47)</sup> 앞 장에서 언급한 1920년 낙태금지법 제정은 “인구증가주의와 우파의 도덕에 대한 강박관념이 연합한” 결과였고, “인구증가주의와 가족주의의 유용성 확인”해주는 것이었다.<sup>48)</sup> 인구동맹은 사법부가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1921년부터 국가 예산으로 도별로 셋째 혹은 넷째 아이에 대한 출산격려금 지급이 가능해지자 이의 실질적 집행을 요구해 1922년에 22개 도, 1923년에 45개 도, 1924년에

46)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son histoire à travers les textes, t.II, 1870-1945*, Paris: Association pour l'étude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1996, pp.385-386.

47) R.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t.II, pp.176-177.

48) Philippe Cibois, “Le natalisme national”, *Esprit*, n.10, octobre 1982, p.84.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126.

62개 도, 1925년에 82개 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출산증가를 위한 선전활동과 교육을 주도하면서 1928년 말부터 군부대에서, 1929년 봄부터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하게 만들었다.<sup>49)</sup>

양차대전 사이 가족보호 정책 발전에는 인구동맹과 함께 가족운동 단체의 역할이 컸다. 다자녀가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열 자녀를 둔 퇴역 장교 메르(Simon Maire)가 1908년에 결성한 ‘다자녀가족부모 민중동맹’(Ligue populaire des pères et mères de familles nombreuses)이 최초였다. 이 단체는 1911년 4월 파리에서 다자녀가족 지원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여 1913년 빈곤 다자녀가족지원 법이 제정되는 데 기여했다.<sup>50)</sup> 하지만 메르를 비롯해 주요 활동가들이 1차 대전에 동원되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1920년대 초 이후에는 거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민중의 자발적인 가족운동이 침체해가던 시점에서 가톨릭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은 부르주아 중간계층의 가족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주요 산업지대로 혁명적 노동운동이 왕성했고 동시에 가톨릭 사회운동의 영향력도 강했던 프랑스 북부 노르(Nord) 도에서 다섯 자녀 이상을 둔 중간계층이 1915년에 ‘가장 위대한 가족’(Le Plus grande famille)이란 단체를 결성해 가족운동을 전개하였고 1차 대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중간계층 가족운동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1921년 보르도에서 열린 제3회 전국출산증진대회에서는 ‘전국

---

49) Françoise Thébaud, “Le mouvement nataliste”, p.290. *Bulletin de l'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novembre 1922, p.343. *Revue de l'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avril 1925, p.121, janvier 1929, p.1, novembre 1929, p.355. 인구동맹의 잡지 명칭은 1923년부터 Bulletin에서 Revue로 변경되었다.

50) 민유기, 「‘출산과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160-161쪽.

다자녀가족동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familles nombreuses)이 결성되었다.<sup>51)</sup>

가족운동 단체들이 1920년대에 요구한 “가족투표권은 인구동맹과 모든 가족운동 단체의 요구들 가운데 가장 독창적인 것” 이었다.<sup>52)</sup> 1848년 2월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에서 채택된 성인 남성 보통선거권은 가족운동 단체들이 보기에 각종 선거에서 자녀가 많은 가장과 독신 혹은 자녀가 없는 가장이 모두 한 표씩을 행사하기에 불평등한 것이었다. 가족운동 단체들은 “가족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이 가족문제에 결정적으로 우호적이어야 하며, 입법자들이 가족에 우호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입법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커다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53)</sup> 가족투표권 요구자들은 부인과 자녀 수 만큼의 투표권 혹은 가장의 개인적 투표권 외에 가족 대표로서의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가족투표권 입법 제안은 1923년 12월 하원에서 거부되었다. 여성의 참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투표권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가장에게 부여하려 했다. 이에 페미니즘 진영은 가족투표권이 아닌 성인 여성의 투표권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여성 참정권 법안은 1926년에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보수적 상원의 논의 거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가족투표권을 요구하던 가톨릭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여성 참정권에 반대하였다.<sup>54)</sup>

---

51) R.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t.I, p.247, t.II, p.181, p.139.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120.

52) F. Thébaud, “Le mouvement nataliste”, p.291.

53) André Toulemon, *Le suffrage familial ou suffrage universel intégral, le vote des femmes*, Paris: Sirey, 1933, p.15.

54) R.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t.II, p.51, p.104. De Luca BARRUSSE, *Les familles nombreuses*, p.223.

가족투표권 요구 외에도 가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졌다. 1925년 시의회 선거에서 가족운동 단체들은 가족보호에 적극적인 정당과 정치가 명단을 발표하였고, 인구동맹도 총선 때 마다 이전 의회에서 가족보호를 위해 노력한 의원모임 참여 정치가 명단을 공개했다.<sup>55)</sup> 1923년에 가족투표권 그리고 1926년에 여성 참정권 입법이 실패하자 가족운동 단체들은 1927년부터 가족투표권 운동을 재개했으나 여성 참정권 문제와 연결되면서 통일적인 입장을 갖기 어려웠다. 이에 1930년 릴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출산증진대회는 가족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사안들을 담당하는 모든 공공연구기관, 행정기관, 각종 위원회에 가족운동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였다.<sup>56)</sup>

1932년 가족수당 의무화 법은 1920년대 가족운동 단체와 인구동맹의 왕성한 활동의 결과였다. 전국다자녀가족동맹은 1927년에 정부의 법률적 개입을 통한 가족수당금고의 확산을 요청했다.<sup>57)</sup> 고용주들의 자발적 노력을 중시하던 가톨릭 사회운동 진영 역시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톨릭의 사회참여를 강조한 1891년에 발표된 ‘사회교리’ 회칙(Rerum Novarum) 40주년인 1931년에 교황은 ‘40주년’(Quadragesimo Anno) 회칙을 발표했다. 이 회칙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이 임금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58)</sup> 이후 여러 가톨릭 신문은 의회 논의 중인 가족수당 의무화 법안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1932년 1월23일 『노르의 십자가(La croix du Nord)』는 의회 논의 중인 가족수당 의무화 법이 “고용

55) *Le Foyer*, juin 1925, p.1. F. Thébaud, “Le mouvement nataliste”, p.288.

56) *12e congrès de la natalité de Lille, Cmpte rendu*, Lille, 1930, pp.29-30.

57) R.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t.II, p.139.

58)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418.

주의 자유와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성스럽게 한다”고 적었다.<sup>59)</sup>

1929년 가을에 미국의 주식시장 붕괴로 시작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1930년대 프랑스 경제 역시 크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결혼 및 출산 기피는 다시금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1935년에 개최된 상공인연합대회(Congrès de la Confédération des groupements commerciaux et industriels)는 “밀을 만들기 위해 종자가 필요하다면 사업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필요”하다며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확대를 요구하였다.<sup>60)</sup>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연례 전국가족수당대회 역시 가족수당 의무화 법의 실제 적용과 운영에서 나타난 수당금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 가족수당금고가 모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다른 사회활동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 등을 결의하였다. 특히 1939년 5월에 개최된 제18회 대회는 가족수당 제도의 발전적 개선, 가족수당과 출산장려금 제도의 효율적 정비, 비임금 생활자에 대한 가족수당 확대 등을 결의하였다.<sup>61)</sup>

59) *La croix du Nord*, 23 janvier 1932.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431에서 재인용.

60) *L'Economie Mosellane*, 10 février 1935.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566에서 재인용. pp.564-566에서는 이 대회에서 다루어진 가족정책 문제를 소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신생아는 1933년에 1년 전에 비해 4만 여명이 감소해 68만2천명인데 같은 해 독일의 신생아는 95만6천명, 이탈리아의 신생아는 99만6천명이다. 프랑스는 10년 내에 주요 도시 11개에 해당하는 인구를 상실할 것이다. 전국상업조합 대표자 회의는 정부에 지체 없이 가족에 호의적이고 가족이 확대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수단들을 채택하고 구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1. 정부, 의회,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의 행동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가치와 권리를 재평가하기 2. 이혼법 적용의 제한 3. 낙태 억제 4. 여성들을 가정으로 되돌아가도록 장려 5. 가족투표권 신설 6. 가족재산에 대한 법 개선 7. 직계 상속세 폐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61)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p.560-563, pp.569-570, pp.573-574.

인구동맹 역시 대공황 시기에 활발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인구동맹의 총서기는 1934년에 “의지적으로 한 자녀만 낳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이미 태어난 한명의 아이에 대한 범죄”라고 주장하였다.<sup>62)</sup> 히틀러가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독일을 재무장시켜 1936년에 라인란트를 장악하고, 193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주테란트를 병합하자 인구동맹의 선전활동에서는 전쟁위험과 국방문제가 크게 강조되었다. 인구동맹의 1936년 주요 슬로건은 “프랑스인의 출산이 충분했다면 히틀러는 군대를 라인란트로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다”였고 1938년의 주요 슬로건은 “저출산은 전쟁의 수용이다”였다.<sup>63)</sup>

양차대전 사이 보수적 중도우파 정당들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인구동맹과 가족운동 단체들은 출산증가와 가족보호 논의와 정책을 위한 공론장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렇다면 좌파 정당들과 혁명적 노동운동 진영은 이 같은 공론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을까?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차례이다.

### Ⅲ. 진보진영의 가족보호 공론장 확대

이 글의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양차대전 사이 좌파정당이나 노동운동 진영의 가족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시기 좌파가 하원을 장악했을 때 주요 가족정책이 나온 것은 1939년의 가족법 뿐이며 20년대의 다양한 다자녀가족 지원

---

62) *Revue de l'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février 1934, p.45.

63) F. Thébaud, “Le mouvement nataliste”, pp.282-283.

정책과 1932년 가족수당 의무화 법은 보수적 중도우파 집권기에 나타났다. 가족법이 제정된 1939년은 1936년 총선에서 승리한 급진당, 사회당, 공산당 연대인 인민전선이 무너진 이후지만 여전히 좌파가 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 2차 대전 발발 직전이라 국방과 인구수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심하던 시점이었다.

1920년대 초 중도우파가 가족정책을 주도할 때 급진당 소속 의원의 가족보호 관련 입법 제안이 있었다. 1901년에 창당한 급진당은 1차 대전 전까지 우파인 온건 공화파와 구별되는 중도좌파 정당이었다.<sup>64)</sup> 양차대전 사이 급진당 내 우파 대부분은 중도우파 연합에 가담했고 당내 좌파는 좌파연합에 참여했으며 당내 중도파는 상황에 따라 우파와 좌파연합을 선택했다. 급진당의 중도파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보카노브스키(Maurice Bokanowski)는 1920년 2월 임신수당, 출산장려금, 수유보조금, 14세까지의 자녀 양육비를 직종에 따라 연간 임금의 5%에서 7.5%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임금’(salaire familial)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가족수당금고를 운영하던 고용주들의 압력행사로 입법되지 못했다.<sup>65)</sup>

고용주 온정주의에 의해 본격화된 노동자 가족수당 제도는 당대인이 보기에 “다수의 노동자들에 의해 아주 만족스럽게 수용”되었다.<sup>66)</sup> 1920년대 크리스천 노동조합은 가족수당을 환영했다. 하지만 1895년에 결성되어 혁명적 노동운동을 주도한 ‘노동총동맹’(CGT)과

64) 급진당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민유기, 『20세기 전환기 프랑스의 급진공화파와 중도정치』, 『프랑스사 연구』22호, 2010, 101-130쪽.

65) 1921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전국가족수당금고대회에서 52개 금고가 보카노브스키 제안에 반대를 2개 금고만이 찬성을 표명했다. D. Ceccaldi, *Histoire des prestations familiales*, pp.36-37.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388.

66) P. Richemond, “Allocation pour charges de famille et caisses de compensation”, *Revue d'Economie politique*, 1920, p.601.

1920년에 사회당과 공산당이 분리된 후 1922년에 결성된 친 공산당 성향의 ‘통일노동총연맹’(CGTU)은 고용주가 주도한 가족수당 제도에 반대했다. 1920년대 이 두 전국노조는 가족수당이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임금인상을 방해하고, 노동자를 고용주에 의존하게 만들며,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노동자를 구분하여 계급 분열을 야기하며, 고용주의 노동자 사생활에 대한 개입을 허용해 노동자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했다.<sup>67)</sup>

가족운동 단체들에 영향력을 행사한 가톨릭 사회운동 활동가들은 1923년 ‘사회주간’에서 “가족수당은 노동시장 가격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되며, 가족수당은 분배정의의 이름으로 가족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서비스”임을 강조하였다.<sup>68)</sup>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임금인상을 유보하기도 했다. 좌파 신문은 이를 비난하였다. 1904년에 사회주의 신문으로 창간되었으나 1920년에 창당한 공산당 기관지가 된 『뤼마니테(L’Humanité)』는 1924년에 “노동의 결과인 임금은 노동자의 삶 자체만이 아니라 재생산, 즉 노동자 가족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가족수당은 임금의 이 같은 두 번째 기능을 없애고 가장과 남편 뿐 아니라 독신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가족수당을 비판했다.

1921년에 창간되어 기존 기관지를 대체하며 노동총동맹의 새로운 기관지가 된 『민중(Le Peuple)』도 1923년에 “상인들과 공장주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들 간에 계층을 나누고 아이가 있는 생산자에게 거짓 이권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고용주에 밀착시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1924년에도 고용주의 가족수당을

67) D. Ceccaldi, *Histoire des prestations familiales*, pp.31-32.

68) R. Talmy,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t.II, p.130.

“거짓 자선활동”으로 비판하면서 “그 자금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69)</sup> 사회당 의원 르바(Jean-Baptiste Lebas)는 1923년 12월18일 하원 연설에서 “가족수당을 통해 경영자가 추구하는 목적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서로서로 반목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노동자 가족수당을 비판했다.<sup>70)</sup>

1924년 총선에서 승리해 1928년 총선까지 하원을 장악한 좌파연합 시기에는 가족수당의 의무화와 국가 개입 요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71)</sup> 1928년 총선에서 다시 중도우파가 승리하면서 1932년 가족수당 의무화 법을 낳은 법률 계획안이 하원에 제출되었다. 가족수당 의무화 법은 고용주의 가족수당금고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목적을 지녔다. 법안 제안자인 중도우파 랑드리는 의무화 법이 고용주들이 시작한 가족수당의 “기존 체제가 지닌 특성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수당의 의무화가 “기존 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2)</sup> 하지만 노동총동맹 기관지는 “아이의 양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그 동안 “공공서비스의 결핍으로 인해 고용주가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고용주가 아니라 국가에 맡겨져야 하고 이는 최우선적인 사회연대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가족수당 의무화 법 제정을 통해 가족수당금고를 “노동

---

69) *L'Humanité*, 22 février 1924. *Le Peuple*, 29 mai 1923. 14 mars 1924.

70)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398.

71) Roger Rhein, *Les allocations familiales obligatoires. Le régime de la loi du 11 mars 1932*, Paris: Sirey, 1932, pp.38-39.

72) *Le Nouvelliste de Rennes*, 4 mars 1929. *L'Avenir de Toul*, 7 mars 1929.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p.410-411에서 재인용.

자 대표와 국가가 공동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3)</sup>

전국금속노조는 1924년 8월에 가족수당이라는 사회연대의 영역에 고용주가 개입하게 하는 것은 생디칼리즘(Syndicalisme)의 핵심 원칙에 위배된다고 천명했다.<sup>74)</sup> 프랑스의 혁명적 노동운동인 생디칼리즘은 1906년 아미앵 헌장(Charte d'Amiens)을 통해 노동자의 직접 행동을 통한 사회혁명을 강조하였다. 혁명적 노동운동 진영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1920년대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가족수당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고 반대해 왔다. 하지만 1929년 가족수당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부분적인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 1929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6차 노동총동맹 대회는 가족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다자녀가족 보조금, 출산과 양육수당 제도는 실업, 질병, 장애, 노후에 대한 보호와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조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구성한다. 개인적 자선이나 박애에 대한 체계적인 호소는 이러한 문제들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예측상태를 조성할 위험을 지닌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가족수당의 운영에 대해 경계해야한다.

노동조합 활동에 반대하는 고용주들이 고안한 초과임금(sursalaire)은 위험하다. 그것은 임금의 하락을 초래하고 가족이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동료들이 상반된 요구를 하며 대립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고용주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 고용주는 기업의 비용 절감이 필요할 때 가족이 딸린 노동자를 해고할 것이다. 가족수당금고를 통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자 가정에 대한 고용주의 간섭을 허용하는 위험스런 서류철들이 고용주의 손에 들어간다. 이는 고용주가 자의적인 규칙에 의해 관리되는 노동자를 소유하는 수단이며, 노동자의 해방 노력에 저항하는 수단이다. 어떤 경우든 현재의 가족수당체제는 사실상 자본주의 지배와 노동자의 투쟁에 대한 반작용 수단

73) *Le Peuple*, 6 mars 1929, 16 février 1929, 26 février 1929.

74)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398.

의 확대를 만들어낸다.

노동자들이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거짓되고 위험한 박애에 반대하며 우리는 노동조합에 의해 결정된 최소임금의 적용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족수당, 출산수당, 양육수당의 형태로 다자녀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관을 요구한다. 고용주에게 맡겨졌던 가족 지원 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을 포함하는 공식 위원회를 통해 국가에 맡겨져야만 한다.

사회적 권리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은 완전히 노동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변화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질병과 모든 형태의 실업들이 가족수당 수혜 가족들을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은 현재의 가족수당 지급 방식을 확대할 목표를 지닌 모든 입법 계획에 결합하지 않을 것이다.<sup>75)</sup>

이처럼 가족보호를 사회적 서비스로 규정한 노동총동맹은 노동자 가족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것이 노동에 대한 초과분의 대가가 아니어야 함을 강조했다. 고용주가 주도했던 가족수당금고 체제의 확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1929년 9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제5차 통일노동총동맹 대회도 “가족수당을 경영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용주가 분담하는 재원을 노동자가 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sup>76)</sup> 노동총동맹은 1931년 9월에 “가족수당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으므로, 가족수당의 전면 실시가 지닌 유해한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수당 의무화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족수당 제도를 더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1932년 7월 가족수당 의무화 법이 가족수당금고를 운영해온 고용주의 자유를 온전히 유지해 주자 통일노동총동맹은 이 법이 계속해서 노동운동에 대한 “고용주의 압력 수단을 제공”했다며

75) *Ibid.*, pp.412-413.

76) *Ibid.*, p.415.

비판하였다.<sup>77)</sup>

하지만 대공황 시기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자 30년대 중반부터 좌파 정당들은 가족보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로 프랑스의 실업자는 1935년까지 크게 늘어났다. 프랑스에서는 1935년 5월에 임금생활자 40% 이상이 일시적 실업 상태였고, 1931년에 50만 명 이었던 실업자 수는 1936년에 1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산업 분야 일자리 수는 같은 기간에 120만여 개 감소했다.<sup>78)</sup> 이런 상황에서 1932년 가족수당 의무화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32년 총선에서 승리해 하원다수를 차지한 좌파 정당들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 동안 23개의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sup>79)</sup> 대공황이 파시즘의 성장을 가져오자 급진당, 사회당, 공산당은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구성하여 1936년 5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인민전선을 결성하면서 그리고 총선 승리 후 정부를 구성하면서 가족보호에 대한 좌파 정당들의 소극적 기존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

1930년대 좌파정당의 가족보호에 대한 입장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낙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가톨릭이나 도덕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1920년대 출산증가를 위해 중도우파 정부가 입법한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사회당과 공산당은 반대했었다. 네오맬더스주의 선전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회당 의원들은 1928년에 1920년의 낙태금지법 폐지를 주장했고 공산당과 급진당도 이에 동의하였다.<sup>80)</sup> 공산당 의원들은 1932

---

77) *Ibid.*, p.425, p.433.

78) J. Ancelin, *L'Action sociale familiale*, p.80.

79)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t.II, p.561.

80) F. Ronsin, *La grève des ventres*, pp.200-201.

년에 낙태 합법화 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했다.<sup>81)</sup> 1920년대 대부분의 좌파 정치가들은 낙태가 몸에 대한 자율권을 지닌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 이 같은 입장이 바뀌었다. 낙태를 억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낙태가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동”이며 동시에 “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제공”한다며 완전한 낙태의 자유도 비판하였다.<sup>82)</sup>

『뤼마니테』는 1935년과 1936년에 “가정의 구성은 개인의 행복”이며 출산은 “생명 재생산의 시작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성스럽고 절대불가침한 사랑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모성의 사회적 국가적 기능을 중시하였다.<sup>83)</sup> 출산을 개인의 문제이자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문제라고 인식한 것이다. 『뤼마니테』는 1935년 11월 17일부터 1936년 1월 2일 사이에 ‘가족구호(Au secours de la famille)’라는 연재 기사를 게재했다. 1936년 1월에 개최된 공산당 제8차 전당대회에서 당 서기장 토레즈(Maurice Thorez)는 “자본의 착취에 의해 나타난 인구감소는 프랑스 민중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재앙 가운데 하나”라며 공산당이 본격적으로 아동과 가족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천명했다.<sup>84)</sup>

이 전당대회 소식을 전한 『뤼마니테』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명만 낳는 것은 부르주아이며 노동자는 출산과 다자녀를 희망”하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적고 있다. 공산당은 “노화된 국가, 연약하고 줄어들며 사라져가는 민중”을 재앙으로 간주하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아이를 국가에 제공해주는 것이 최초의

---

81) *L'Humanité*, 19 février 1932.

82) *L'Humanité*, 19 décembre 1935, 1 janvier 1936.

83) *L'Humanité*, 30 mars 1936, 23 novembre 1935.

84) F. Ronsin, *La grève des ventres*, p.202.

애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행복과 번영의 빛나는 미래를 준비” 하고 “노동계급과 프랑스 민중의 이익을 새롭고 보다 고차원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성, 아동, 가족보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sup>85)</sup>

대공황으로 인해 민중의 궁핍함이 심화되어 가던 1930년대 중반 이래 공산당과 사회당의 가족보호에 대한 강조는 1920년대 보수적 정치세력과 가족운동 진영이 형성시킨 가족보호 공론장을 크게 확대시켰으며 1939년 가족법이 제정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를 자세히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 중반 인민전선의 형성을 낳은 파시즘 단체들의 위기감 조성과 이에 반대한 반파시즘 시위들, 인민전선의 선거승리 및 정부구성, 그리고 참여 정당들의 에스파냐 내전 지원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인민전선의 와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좌파정당들이 가족보호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도우파와 가톨릭 사회운동 세력이 주도해 왔던 가족보호 공론장에 좌파정당들이 적극 참여하고 가족보호를 사회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강조한 것이 관련 공론장의 외연을 확대시켰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

85) *L'Humanité*, 23 janvier 1936, 2 janvier 1936.

## 맺음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1961년 박사논문으로 독일어로 1962년에 출간되었고 현실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어 가던 1989년에 영어로 번역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근대 서유럽 부르주아들의 민주적 개방적 토론 및 여론형성 공간을 강조하여 개인과 국가를 매개하는 시민사회 연구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 일으켰다.<sup>86)</sup> 이 글에서는 양차대전 사이 프랑스의 다양한 가족보호 정책들을 살펴 본 후, 1920년대 가족수당금고를 운영한 고용주, 다양한 가족운동 단체의 활동이 가족보호 문제에 대한 공론장을 형성시켰으며, 1930년대 중반부터 좌파정당들과 노동운동 진영이 이 같은 공론장을 더욱 확대시켰음을 고찰하였다.

1939년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는 1940년 6월 독일에 항복했으며 7월에 비시에 친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비시 정부는 프랑스 제3공화국과 단절을 강조했지만 1939년 7월에 제정된 가족법을 실행하고 이를 더욱 확대한 다양한 가족정책을 실시했다. 비시 체제는 ‘노동, 가족, 조국’을 슬로건으로 한 이른바 ‘민족혁명’을 내세우며 전반적인 사회개조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비시 정부의 가족정책은 유사 파시즘이라는 체제의 특성에 걸맞게 매우 보수적인 것이었다. 낙태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돼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여성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역할만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고, 출

---

86)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9,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나남, 2001.

산장려금이나 가족수당은 모성보호와 아동양육 및 가족 유지비용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서가 아니라 인구를 증가시키고 가부장적 권위에 기초한 가족을 사회의 기본 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되었다.

비시 시기 가족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기 가족정책은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전 시기의 가족정책과 어느 정도의 연속성도 존재한다.<sup>87)</sup> 하지만 1946년에 탄생한 통합적 사회보장제도는 나치와 비시 정부에 저항했던 드골의 ‘자유 프랑스’와 레지스탕스 활동을 주도한 좌파정당들이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었고, 대공황 시기 가족보호에 대한 좌파정당들의 가족보호에 대한 입장이 계승된 것이었다.

사실 가족보호는 현상적으로 우파와 좌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가족보호 정책이 실시되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1920년대 우파는 보수주의적 도덕과 가부장적 권위에 기초한 가족을 중시했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 좌파 정당들과 노동운동 진영은 출산과 양육 및 가족 유지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것이며, 모성과 아동,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서비스로 강조했으며, 가족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며 보다 자유롭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 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형성하고 확대한 양차대전 사이 가족보호 공론장은 이후 가족정책이나 사회보장 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 관련 논의와 정책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87) 신행선, 『프랑스 비시 정부 시기 가족정책과 여성』, 174쪽.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가족보호정책과 사회보장개혁의 공론장 형성

**주제어** : 가족보호, 사회보장, 가족수당, 저출산, 공론장

(논문투고: 2011.3.10/ 논문심사완료: 2011.4.13/ 논문게재 확정일: 2011.5.6)

## 참고문헌

### 1. 간행물 사료

Bertillon, Jacques, *La dépopulation de la France: ses conséquences, ses causes, mesures à prendre pour la combattre*, Paris: F. Alcan, 1911.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La Sécurité sociale: son histoire à travers les textes, t.II, 1870-1945, t.III, 1945-1981*, Paris: Association pour l'étude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1996, 1997.

*Compte rendu du 1er Congrès de la natalité*, Nancy: Imp. Réunion, 1919.

*Congrès international de la population Paris 1937, t.V. Démographie statistique, études spéciales, nuptialité, natalité, mortalité*, Paris: Hermann, 1938.

*12e congrès de la natalité de Lille, Compte rendu*, Lille, 1930.

*L'état de la France 2003*, Paris: La découverte, 2003.

Hubert, René, *Salaires, Allocations familiales et Caisses de compensation*, Paris: Edition Société d'Etudes et d'Informations économiques, 1921.

Landry, Adolphe, *La révolution démographique: études et essais sur les problèmes de la population*, Paris: Sirey, 1933.

Rhein, Roger, *Les allocations familiales obligatoires. Le régime de la loi du 11 mars 1932*, Paris: Sirey, 1932.

Richemond, P., “Allocation pour charges de famille et caisses de compensation”, *Revue d'Economie politique*, 1920.

Toulemon, André, *Le suffrage familial ou suffrage universel intégral, le vote des femmes*, Paris: Sirey, 1933.

2. 신문 잡지 사료

*Bulletin de l'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Le Figaro*

*Le Foyer*

*L'Humanité*

*Journal officiel*

*Le Peuple*

*Plus Grande Famille*

*Revue de l'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3. 연구서와 논문

민유기, 『‘출산과업’과 ‘민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프랑스 가족보호정책의 기원 1874-1914』, 『서양사론』 89호, 2006.

\_\_\_\_\_. 『20세기 전환기 프랑스의 급진공화파와 중도정치』, 『프랑스사 연구』22호, 2010.

신행선, 『프랑스 비시 정부 시기 가족정책과 여성』, 『서양사론』 92호, 2007.

\_\_\_\_\_. 『양차대전 사이의 프랑스 페미니즘과 출산에 대한 담

론 1919-1939」, 『한국프랑스학논집』 61집, 2008.

Ancelin, Jacqueline, *L'Action sociale familiale et l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Paris: Association pour l'étude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1997.

Bard, Christine, *Les femmes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au 20e siècle*, Paris: A. Colin, 2001.

Bordeaux, Michèle, *La victoire de la famille dans la France défaite, Vichy 1940-1944*, Paris: Flammarion, 2002.

Borne, Dominique et Dubief, Henri, *La Crise des années 30, 1929-1938*, Paris: Seuil, 1989.

Ceccaldi, Dominique, *Histoire des prestations familiales en France*, Paris: Association pour l'Etude de l'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2005[1957].

Chauvière, Michel et Kertudo, Pauline, *Les mouvements familiaux et leur institution en France. Anthologie historique et sociale* (n.3 Cahier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Paris: Comité d'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laie, 2006.

Cibois, Philippe, "Le natalisme national", *Esprit*, n.10, octobre 1982.

Cova, Anne, *Maternité et droits des femmes en France XIXe-XXe siècles*, Paris: Economica, 1997.

De Luca Barrusse, Virginie, *Les familles nombreuses: une question démographique, un enjeu politique France 1880-1940*,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8.

Dreyfus, Paul, *Emile Romanet, père des allocations familiales*, Grenoble: B. Arthaud, 1964.

- Drouhet, Pierre, *L'évolution juridique des allocations familiales*, Paris: Edition sociales française, 1943.
- Dupâquier, Jacques (et al.), *Histoire de la population française t.IV*, de 1914 à nos jours, Paris: PUF, 1988.
-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89, 한승완 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연구』, 나남, 2001.
- Hatzfeld, Henri, *Du paupérisme à la sécurité sociale 1850-1940*, Nancy: Presses universitaires de Nancy, 1989.
- Pine, Lisa, *Nazi Family Policy 1933-1945*, New York: Berg, 1999.
- Ronsin, Francis, *La grève des ventres: Propagande néo-malthusienne et baisse de la natalité en France 19e-20e siècles*, Paris: Aubier, 1980.
- Talmy, Robert, *Histoire du mouvement familial en France 1896-1939*, t.I, t.II, Aubenas: Union nationale d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1962.
- Thébaud, Françoise, "Le mouvement nataliste dans la France de l'entre-deux-guerres: l'Alliance nationale pour l'accroissement de la population française", *Revue d'histoire modern et contemporaine* t.32, avril-juin 1985.
- Valat, Brono, *Histoire de la Sécurité sociale 1945-1967: l'Etat, l'institution et la santé*, Paris: Economica, 2001.
- Weber, Eugène, *La France des années 30. Tourments et perplexités*, Paris: Fayard, 1994.

## Public Sphere Formation for Family Protection Policy and Social Security Reform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France

Min, You-Ki

This study is dedicated to examining how the public sphere for French family protection policy and social security reform was formed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o that end, it focuses on three areas: development of French family protection policy during that period, employer paternalism that affected the policy and actions of family movement groups, and labor unions and left-wing party's positions and demands regarding the policy.

A sense of crisis about decreasing population, which had emerged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became all the more aggravated since the World War I. In response, employer based on paternalism began to provide their workers with family allowance. In the 1920's, conservative political groups improved the family policy through an array of legislations designed for supporting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In 1932, a law that made family allowance mandatory was enacted, and in 1939, a law known as the Family Code was introduced.

The development of family policy between the two World Wars

was affected by the National Alliance for Population Growth, and other family advocacy groups based on catholic social movement. Until the 1920's, labor unions and left wing party were inactive in promoting family protection policy. They thought that family allowance led to a cut in laborers' wages and could serve as a tool for employers to control the working clas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the 1930's, however, as the living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worsened, they began to demand the government to promote more active family protection policy.

In short, the ongoing discussions and initiatives for family protection by different groups — National Alliance for Population Growth, a diversity of family movement groups, labor unions, and conservative politicians and left wing party— led to the 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for the birth of social security system after the World War II.

**Key Words** : Family Protection, Social Security, Family Allowance, Depopulation, Public Sphere